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학생회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않은"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준 받을"을 "인준받을"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산하기구"를 "'산하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해임된"을 "사퇴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보존해야"를 "보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력해야"를 "노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처리세칙」으로"를 "세칙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본회"를 "본회의"로 하고, 제3항 중 "본회"를 "본회의"로 하며,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본회 산하기구는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2.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될 때
 3. 계약 내용 등이 사전에 공개되었을 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 운영상의 피해가 우려될 때
 4.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때. 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의 종료 이후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학생총회"를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의"를 "상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회칙·세칙·규칙에 다르게 정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 중 "진행해야"를 "진행하여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세칙) 그 밖에 의결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때에"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전체학생총회 개최 10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4. 비상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단, 소집이 요건을 위반하여 이뤄지는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소집 결정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의장은 비상학생총회 개회 1일 전에 학생총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제1항제1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본회 회원 2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제2항제1호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제2호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제1항 중 "1/3"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10"을 "10분의 1"로, "1/8"을 "8분의 1"로 한다.

제25조 중 "대중"을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지위)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 최고의 의사결정투표이다. 학생 총투표의 의결은 학생총회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 중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을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형식) 학생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권한) 학생총투표는 학생총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학생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되었을 때
 5.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2. 제1항제1호의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시행 7일 전에 학생총투표의 시행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안건상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라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학생총투표로 부의된 경우
5.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제31조의 제목 "성립·의결·요건"을 "성립·의결 요건"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개표완료시부터"를 "개표완료 이후"로, "중앙투표관리위원회"를 "학생총회 의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시행"을 "시행일"로, "결정"을 "의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1/20"을 "20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을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9조"를 제27조"로, "1/8"을 "8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표완료시부터"를 "개표완료 이후"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전학대회"를 ""전학대회"라 한다"로, "위임 받은"을 "위임받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 중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의결에 준하는 효력”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구성) 전학대회는 제35조에서 정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제35조제1항 중 “전학대회의 대의원”을 “전학대회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이라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존재하는 경우 회장단 중 1인”을 “각 학부·학과학생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의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대의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대의원은 임기만료·탄핵·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대의원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4.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소속 회원의 합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단, 소속 기구의 자치규칙이 없거나 자치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대표에 한한다.
5. 중앙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대의원 정수) 대의원 정수는 50인으로 하되, 비례 대의원석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제2항 중 “표명해야”를 “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참여해야”를 “참여하여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권한) 전학대회는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학대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며,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사고이거나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중앙운영위원 중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한다.

제38조제1항의 “매 학기 초 및 해당 연도 말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제165조제2항에 따른 매 분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의해”를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회일 5일 이전에 회의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를 “개회 5일 전에 전학대회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로, “2/3”을 “3분의 2”로 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5.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6.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7.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또는 전문기구장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때
8. 제185조에 따른 회칙 개정안 또는 제191조제3항에 따른 세칙·규칙 제정안 또는 폐지안이 발의되었을 때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안건의 상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전학대회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5. 학생총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
6. 전학대회 의장이 그 밖에 전학대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제3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
2. 전학대회는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41조 중 "발의된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거나"를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로 발의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심의·의결하거나"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중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의"를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의"로, "의결"을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전학대회 대의원"을 "대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를 "단, 해당 대의원이 중

양운영위원직을 겸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의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의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여 의결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의 “채택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계”를 “재정”으로,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를 “인상·인하안을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47조제2항의 “전학대회 정기회의”를 “전학대회 정기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회원 전체의 명의”를 “본회의 명의”로,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를 “소송권을 위임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출석 대의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전문기구장”을 “상설위원회 위원장·상설위원회 부위원장·전문기구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대한”을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체학생총회 소집 및 학생총투표 시행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타 회계 전용에 관한 사항

제48조제3항 중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

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에 따라 서면의결을 시행하는 안건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장은 제38조제4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2.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 중 "대중"을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2조에서 정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52조제1항제2호의 "각 자치기구회장 혹은 회장단 중 전학대회 대의원 당연직인 사람 1인"을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4. 새내기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 임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중앙운영위원은 임기만료 또는 탄핵 또는 사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내기학생회 소속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 명부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본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53조제2항 중 "표명해야"를 "표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여해야"를 "참여하

여야”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다.

제54조제2항 중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를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로, “중앙운영위원 1인”을 “중앙운영위원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1인”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매 달 1회”를 “2주에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의장이 5일 내에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4.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했을 때
5. 그 밖에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3. 의장은 회의 24시간 전에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소집공고 기한을 24시간 전으로 함을 예외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안건의 상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1. 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2. 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

을 발의한 경우

4.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
5.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집과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6. 중앙운영위원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안건의 상정시기)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제57조제1항 중 "안건을 발의"를 "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 문제"를 "세부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 및 시행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 임명 동의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를 "본회 산하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를 "제67조에 따른 집행기구"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기구회장단"을 "자치기구"로, "해당 본회"를 "본회"로, "제소할 경우"를 "제기할 경우에"로,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를 "회칙·세칙·규칙 및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의거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5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중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회칙 개정안과 세칙·규칙 제정·폐지안"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를 "세칙·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직속"을 "산하"로, "위원회"를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안"을 각각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5.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할 수 있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관한 사항
 3. 제170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제49조에 따른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2. 제64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안건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장은 제55조제2항제4호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1. 전학대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발의안
 2.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3. 그 밖에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2.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 중 “대중”을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69조 중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를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해당 연도 말”을 “1분기 초”로 한다.

제166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을 학기”를 “3분기”로, “연도말”을 “1분기 초”로, “결정”을 “심의의결”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한다.

제159조의 제목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선거시행세칙』”을 “세칙”으로 한다.

제164조의 제목 중 “재정운용세칙”을 “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정운용세칙』”을 “세칙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이전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타 세칙의 개정) 재정운용세칙 제15조제1항 중 "전년도 말"을 "전년도 1분기 초"로, "당해년도 여름학기"를 "당해 연도 3분기 초"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반기 제2차"를 "1분기 초"로 한다.